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장덕준 의원)

의안 번호	20-10
----------	-------

발의년월일 : 2020. 1. .

발의자 :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영미, 김진천, 채우진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기능(안 제2조)
- 다.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라.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안 제4조)
- 마.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바. 표창(안 제7조)

3. 관계법령

-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7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20. 1. 28. ~ 2.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2015. 12. 15.] [법률 제13564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06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3조 보조금 지원

나. 제7조 표창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양선아
연 락 처	02-3153-8323